

개인정보보호마크(ePRIVACY마크)제도시행

1. 추진배경

-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이 확대된 반면, 개인정보의 침해·무단유출·매매 등 불법적 피해사례도 증가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,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기반 구축 필요
- 민간의 공신력 있는 제 3자가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함

2. 시행방안

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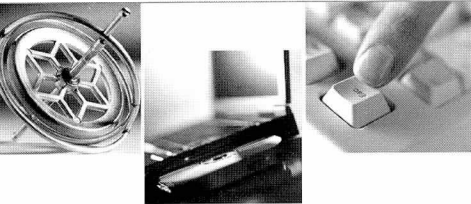
- 주관 :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
 - ※ 협회는 마크부여 여부를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학계·법조계·민간단체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"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(위원장 : 협회 부회장 이재선)를 구성·운영
- 후원 : 정보통신부, 산업자원부, 공정거래위원회, 한국정보보호진흥원, 정보통신윤리위원회

개인정보보호마크(ePrivacy마크) 로고



운영방식

- 마크부여 대상
 -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취급·관리하는 국내 사업자 및 일반인(단체)
 - ※ 신청대상 예시 : 인터넷서비스사업자(ISP), 취업알선·경매 등 전자상거래사이트, 금융·의료사이트, 포털 및 검색사이트, 온라인 여행사이트, 사이버 학원·교육사이트, 이동통신사업자, 무선인터넷컨텐츠사업자,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, 민간단체 등
- 신청방법
 - 개인정보보호마크 홈페이지(www.privacymark.or.kr 또는 www.trustmark.or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
- 심사방법
 -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 및 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·선정(매달 1~2회 실시)
 - ※ 심사기준 :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지침,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심사기준 등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관리, 이용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5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
- 신청비용 : 28만원
(신청수수료 : 8만원, 마크사용료 : 20만원)
- 마크 유효기간 : 마크 부여 후 1년(갱신심사료는 무료)
- 인센티브
 - 개인정보보호마크 취득업체의 자사 회원들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실명확인서비스를 1회 무료 제공 및 추가할인 혜택 부여



-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내용,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, 국제동향 등 개인정보 관련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
-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실무자 대상 전문·보수교육 실시
- 방송·언론사를 통한 취득업체 광고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·월간지 지속 홍보
- 사후관리
 -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마크취득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인터넷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심사기준 위반업체 적발시 시정권고, 마크회수 등 제재조치
 - 마크에 대한 무단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크에 장착하여 자격 없는 자에 의한 무단 이용을 예방

3. 향후 발전방향

- 국내 개인정보보호마크와 미국, 일본 등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마크간 상호인정을 추진함으로써,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마크를 취득한 사업자의 해외이용자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- ※ 2002.2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간 개인정보보호마크 상호인정에 관한 MOU 체결
- 사업자 설명회 개최, 지하철 광고,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

“제1차 개인정보보호마크 및 제5차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인정서 수여식 개최”



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정통부·산자부 등의 후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에 대해 제1차 취득업체를 확정하고 관련업체 대표 및 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5월 22일(수) 오전 10시 한솔CSN빌딩 대강당(5층)에서 “제1차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정서 수여식”을 개최했다.

협회는 개인정보보호마크 보급캠페인 기간(2/28~3/31)중 마크를 신청한 총47개사 62개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온라인 심사와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최근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(위원장 이재선)의 최종심의를 통해 제1차 개인정보보호마크 취득업체로 이동통신사업자, 대형쇼핑몰 및 금융·교육사이트 등이 포함된 39개사 54개 인터넷사이트를 확정하였다.

또한,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(i-Safe)를 신청한 (주)한국전자석유거래소 등 3개사 3개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사 및 방문실사를 거쳐 제5차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취득업체로 선정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마크 취득업체로도 선정하였다.